

MyData 정책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비교

2017. 6. 9.

주요 내용

- I. 개요
 - II.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비교
 - III. 시사점
- <참고> 의료법

I 개요

□ 개인데이터의 정의

- ‘개인데이터’는 개인과 관련한 데이터로, 주요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과에 주목
- OECD는 개인데이터를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개인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¹⁾

< OECD ‘개인데이터’의 유형 >

구분	예시
사용자 제공 데이터	블로그, 의견, 사진, 비디오
활동 데이터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기록,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상품 지불하는 금액 및 방법
소셜 데이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연락처 및 친구 기록
위치 데이터	거주지 주소, GPS 및 핸드폰의 지오로케이션, IP주소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나이, 성, 인종, 수입, 성적 취향, 정치적 성향
공인된 데이터	이름, 금융정보, 계좌번호, 건강정보, 국가건강 또는 사회보장번호, 전과기록

※ 출처 : OECD(2013)를 재정리

- 세계경제포럼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²⁾

< WEF ‘개인데이터’ 유형 >

구분	예시
자발적 데이터 (Volunteered)	개인에 의해 생성되고 개인의 명시 하에 공유한 데이터 (예 : 소셜 네트워크 프로필)
관찰된 데이터 (Observed)	개인의 활동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 (예 : 핸드폰 사용 시 관측된 개인의 위치 정보)
추론된 데이터 (Inferred)	자발적 개인데이터 또는 관측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추측한 개인에 관한 데이터 (예 : 개인 신용평가 점수)

※ 출처 : WEF(2011)을 재정리

1) OECD, EXPLORING THE ECONOMICS OF PERSONAL DATA: A SURVEY OF METHODOLOGIES FOR MEASURING MONETARY VALUE, 02-Apr-2013.

2) WEF, Personal Data: The Emergence of a New Asset Class, January, 2011.

□ 국내외 관련 법률 동향

- 개인데이터는 공공 · 경제산업 · 개인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³⁾
 - ※ 개인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 1,000억 달러인 것으로 추정(WEF, 2012)
- 해외의 경우, 개인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분석·활용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스마트 공시(Dmart Disclosure), MyData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의 제개정 움직임도 발생
 - 2018년 5월부터 EU 회원국에 시행될 「GDPR」에는 개인정보 이동권(제20조)이 포함되어 개인데이터를 자신이 다운받거나 제3자에게 이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right to data portability)
 - 미국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법(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을 비롯하여 분야별 법률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근거로 스마트 공시제도 운영 중
 - ※ (건강)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PA), (에너지)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교육)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등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법 취지상 개인데이터의 활용 보다는 보호에 집중
 -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개별적 개인정보 보호법제 또한 제정·시행되고 있어 운용상의 난맥⁴⁾
 - ※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분야별로 다수의 개별 개인정보 보호 법제 존재
- 현행 개인데이터 보호 관련 3대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대상으로 개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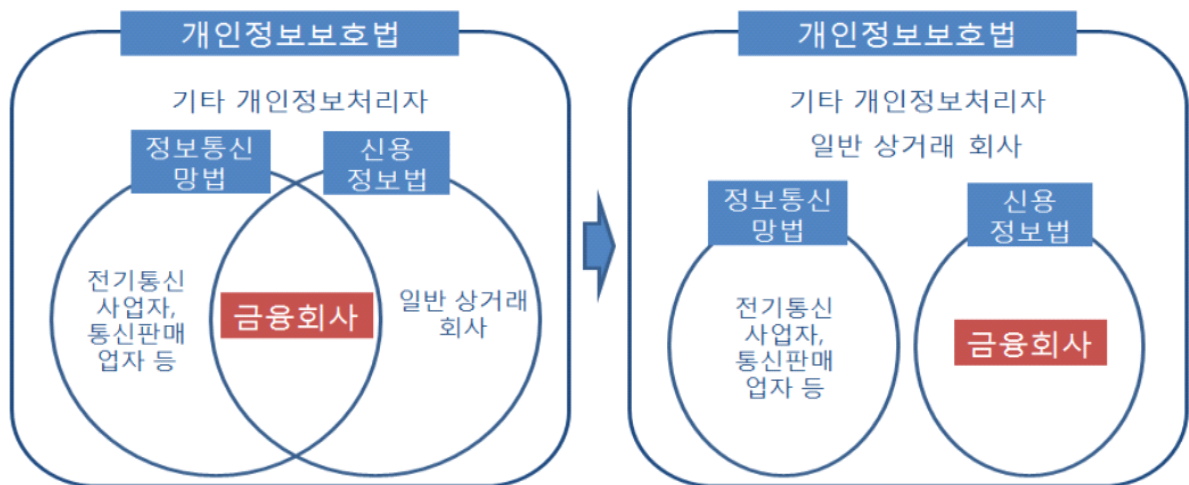
3) WEF, Rethinking Personal Data: Strengthening Trust, May 2012.

4) 김주영, 빅데이터의 통계적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점을 중심으로 -, 제6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빅데이터 시대, 자료수집의 변화와 전략, 2016.10.20.

II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비교

○ 개인정보보호 관련 3대 법률 동향⁵⁾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간 유사 중복 규제 해소, 실무상 적용 대상 법률에 대한 판단의 난해함을 해소하고자 2016년 신용정보법 개정
-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정의하여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법을 적용하고 일반 상거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도록 분리



※ 출처 : 금융위원회(2016)⁶⁾

□ 개인정보보호법

○ 법의 목적과 개인정보의 정의

- 본 법의 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제1조)으로 활용 보다 보호에 초점⁷⁾

5) 금융위원회, 금융권 개인정보보체계, 21년만에 확 바뀐다., 보도자료, 2016.4.18.

6) Soo-Yong SHIN(b), AI for Healthcare (Facts & Limitations) & Privacy Protection for Healthcare, 발표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5.9.

- 본 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제2조 1항)로 법인·죽은 사람의 정보 제외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⁸⁾. 정보 인권(내 정보를 내 뜻대로 지킬 권리)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2가지 측면 >

구분	내 용
소극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수집 · 축적 · 보관 · 제공 등의 거부 •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잘못된 개인정보의 보유나 처리에 대하여 정정이나 폐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적극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관한 정보의 보유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조사를 청구 • 원하는 대상에게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거나 제공

※ 출처 : 권건보(2014)⁹⁾

- 정보주체는 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②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범위 결정, ③ 개인정보 열람 요구(사본 발급), ④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및 삭제, 파기 요구, ⑤ 피해 발생시 구제받을 권리 보유(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7) 김주영, 전거서.

8)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등,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2005.5.26.

9)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심포지엄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와 그 한계’ 발표자료, 한국법학원, 2014.7.15.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공유) 가능(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공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의 동의를 통해 민감정보(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단, 주민번호는 처리 제한(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방법

- 동의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면 동의(전자문서 포함)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명확히 표시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 ①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 ② 공공기관의 법적 소관 업무 수행, ③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대리인)이 의사표시 불가능한 상태,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정보주체 이외로 부터의 개인정보 수집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 정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5만 명 이상 민감정보 처리,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도 알려야 함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 가능)¹⁰⁾

- 로앤비가 자신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로앤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서비스하자 A씨는 2010년 12월 소송
- 로앤비는 A씨의 출생연도는 1992학년도 사립대 교원명부 등에서 나머지 정보는 A씨가 재직 중인 대학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집해 서비스
- “로앤비 등의 행위를 A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의 정의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 (제2조 1항의 6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

10)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선고(2014다235080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수집,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관련 보도자료, 2016.8.18.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1149> 참조 (접속일 : 2017.5.18.)

○ 이용자의 권리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열람, 제공, 오류 정정 요구 가능
- 개인정보 열람·제공·오류 정정 요구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 보다 쉬워야 함(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 이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보유 가능(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정보 및 기능에 접근 가능(제22조의2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 이용자의 동의 또는 타 법률에 의해 필요 최소의 범위 내에서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 가능(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 ① 본인확인기관, ② 타 법령이 정한 경우, ③ 방통위가 고시한 이통사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제23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이용자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가능(제25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방법

- ① 인터넷 사이트 게재 및 이용자 체크, ② 서면 교부, ③ 우편 및 팩스 전송 후 이용자가 서명 날인 제출, ④ 이용자가 동의 체크 후 전자우편 전송, ⑤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획득(동법 시행령 제12조 동의 획득 방법)

○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 ① 경제적 · 기술적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기가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② 서비스 제공의 요금 정산, ③ 법률상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¹¹⁾

○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제2조 정의)

< 신용정보의 종류 >

구분	내 용
신용정보주체 식별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거래내용	개인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 포함),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신용도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개인의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 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
신용거래 능력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상기 항목과 유사 정보	개인과 관련한 법원의 심판·결정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한 정보 및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 등

※ 출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2017.1.10.)¹²⁾

11) 금융분야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이외에도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운영 중임

12) Soo-Yong SHIN(b), AI for Healthcare (Facts & Limitations) & Privacy Protection for Healthcare, 발표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5.9.

-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 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가능 정보).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해당
- o 개인신용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를 수집·조사·처리 가능 (제15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 참고 > 신용정보법 상의 주체 정의

구분	정의 및 기관 예시
신용정보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채권추심회사(나이스신용정보, 케이비신용정보 등 22개사), 신용조사회사(한국티디비신용정보 1개사), 신용조회회사(KCB, 한국기업데이터 등 6개사), 경영신용정보회사(농협자산관리,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사) 등 총 33개사(2016.6월말 기준)¹³⁾
신용정보 집중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과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합되고, 보험개발원 일부 정보, 우체국 보험 등 4대 공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합(2015.12.)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상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영업에 이용하는 자

13)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회사 현황(2016.6월말)

- 사상, 신념,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는 수집·조사 불가
(제16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 금융회사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 외에 업무 중 생성한 정보(금융거래 내역 등)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행위에 해당하며, 정보주체와의 계약·거래에 불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¹⁴⁾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 타인에게 제공 가능(보험회사, 우체국, 공제조합, 공제회 등이 질병 관련 보험·공제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위탁 가능(제17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 신용조회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 업무(제4조 제1항 제1호), 채권 추심, 인·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 증권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상 제32조 제6항 제4호) 외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더라도 계열사에 제공 불가(제22조의3 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금지)
-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정보 제공 가능.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제공 가능. 이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개인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함(제23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사전 개별적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제공 가능(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기존 동의한 목적·범위 내 정보 갱신은 예외.

1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자치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6.1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시 ① 서면, ② 공인전자서명(전자문서) ③ 유무선통신 개인비밀번호 입력, ④ 유무선통신 음성녹음, ⑤ 기타의 방법으로 동의 획득(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 동의 (기존 목적·범위의 정보 갱신 제외) 필요(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고지)

o 개인신용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 ① 법률 특별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 ②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③ 신용정보주체(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 불능 상황, 주소 불명 등 사전 동의가 어렵고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합리적 범위 내)(제15조 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동의 · 동의 여부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동의를 불필요하나 사전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과 집중관리·활용
 2.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
 3. 영업 양도·분할·합병으로 권리·의무 이전시 관련 개인신용정보 제공
 4. 추심채권 추심, 인·허가, 기업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
 6. 범죄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9.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대출자자 등 관련인 신용도 판단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① 개인이 동의한 경우, ② 개인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단, 마케팅 목적 제외), ③ 위 10가지 경우,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판단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 가능(제33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신용조회회사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39조 무료 열람권)

□ 개인정보보호 관련 3대 법률 비교표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대상	정보주체(개인)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 계약 관계 불필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 (상거래 관계)	신용정보주체 (상거래 관계)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
동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처리 위탁 민감·식별정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처리 위탁(재위탁) 민감정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조사 및 처리 타인에게 제공 목적 외 이용 수집·조사 위탁 처리 위탁시 비식별화 원칙적 재위탁 불가 질병 정보 수집 조사 식별정보의 제공·이용 계열사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제공 불가
주민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번호 처리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번호 사용 제한 	-
동의 불요한 수집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의 특별 규정 공공기관 소관업무 계약 체결 및 이행상 불가피한 경우 의사표시 불능, 주소불명 등의 상황에서 정보주체·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하나 경제·기술적으로 통상적 통의가 곤란한 경우 서비스 제공 요금 정산 법률 특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특별 규정 계약 체결 및 이행상 불가피한 경우 의사표시 불능, 주소불명 등의 상황에서 정보주체·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동일 목적·이용 범위 내 개인신용정보 업데이트시 동의 불필요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동의 불요한 제3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특별 규정 •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 의사표시 불능, 주소불명 등의 상황에서 정보주체·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요금 정산 • 법률 특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집중기관에 집중관리·활용을 위해 제공 • 계약 이행상 신용정보 처리 위탁 • 영업 양도 분할 합병 등 권리의무 이전시 관련 개인신용정보 제공 • 채권추심, 인허가, 기업 신용 판단, 유가증권 양수 등 • 법원 제출 명령, 영장 • 범죄로 인한 긴급 상황 • 조세 관련 법률 • 국제 협약 •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대출자자 등 신용도 판단 • 그 밖의 법률
동의 불요 목적외 이용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특별 규정 • 의사표시 불능, 주소불명 등의 상황에서 정보주체·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비식별화) • 법률상 소관 업무 수행 (보호위 심의 의결) • 조약, 국제협정 • 범죄 수사, 공소 제기 • 법원 재판 •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특별 규정 	-

Ⅲ 시사점

- MyData 시범 추진시 법적인 장애는 없을 것으로 판단¹⁵⁾
 - 소비자의 소비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소비 행태를 분석적으로 이해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본질상 소비자의 동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함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음
 - 다만,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데이터 보관과 공개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경쟁 관점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중립적 데이터 공개 표준 제시 필요
 - ※ 하나의 산업군 내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MyData 정책을 빌미로 공격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개인데이터 활용의 취지를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법률 근거 필요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권리에는 정보이동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데이터 활용에 제약 발생
 - 동의에 의해 개인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주체가 개인이 아니어서 정보주체가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그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상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상 신용정보법)가 정보 제공의 주체임
 - 업무 중 생성된 정보도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해야 함

15) 정필운, 마이데이터 정책 도입의 법제도적 검토의견서, 2016.9.

< 참고 >

□ 의료법

○ 의료정보의 정의¹⁶⁾

- 의료정보에 대한 정의가 없어 범위를 한정할 수 없으며, 의료정보와 건강정보에 대한 구분이 없음(키, 몸무게 등은 건강정보)
-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는 환자로부터 수집한 정보와 의료인으로부터 생성되는 정보로 구분

구분	내용
환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성별, 주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보호자 성명 및 주소, 병력 및 가족력, 주된 증상 등
의료인으로부터 생성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행위의 결과 및 의견 정보인 진단 결과, 검사 결과, 진료 경과 및 예견 •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인의 성명, 종별 면허번호, 서명 날인, 진료일시 등

○ 환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

- 환자와 환자 본인 동의 하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지정 대리인 등은 환자의 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 요청** 가능(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불가)(제21조 기록 열람 등)

○ 환자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기록 열람 및 사본 제공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 사본 및 진료경과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16) Soo-Yong SHIN(a), Healthcare data 익명화 (1): 개인건강식별정보란?, 2016년 3월 1일. <https://goo.gl/tXBtq0> 참조 (접속일 : 2017.5.18.)

-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목적 범위 내 보유·이용 가능 (제21조의2 6항 진료기록의 송부 등)

< 의료정보 활용의 2가지 측면 >

구분	내 용
1차적 이용 (동의 획득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 정보(진료 예약, 진단, 검사, 치료) • 병원 경영
2차적 이용 (개별 동의 / 익명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홍보, 환자 교육 등

※ 출처 : 신수용(b)(2016)¹⁷⁾

- o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의 기록 열람 및 사본 제공
 - 환자 동의서(환자 사망 또는 의식 불명시는 동의서 불필요)와 친족 증명서를 가진 배우자, 직계 존속 등 또는 대리 증명서를 가진 지정 대리인의 요청
 - 비용 심사·요양 급여 평가, 의료 급여 비용 심사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 제47조, 제48조, 제63조), 의료급여법(제5조, 제11조, 제11조의 3, 제3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
 - 형사소송법(제160조 압수,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민사소송법(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에 따른 문서 제출 명령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근로자 진료기록 요구시

17) Soo-Yong SHIN(b), AI for Healthcare (Facts & Limitations) & Privacy Protection for Healthcare, 발표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5.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제2항, 제14조 진료기록의 열람)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 청구시
- 병역법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따라 군의관 등이 의료·진료·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요청시 등등(이하 생략)

○ 기타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기타 개별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개인 동의 또는 비식별화 필수

< 의료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 >

법령(예시)	주요 내용
의료법	환자의 진료내역, 병력 등 정보보호
건강검진기본법	검진자료의 활용 및 보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질병·부상 등에 대한 보험 급여
보건의료기본법	질병자/의심자 보고, 신고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 환자 이송
장기이식 등에 관한 법률	장기 이식자 등의 비밀 보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유전 정보 등의 보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조직기증자 정보 보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환자/의사 환자 등 신고의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감염인 진단 검안 사실 신고 의무
혈액관리법	특정 수혈 부작용 신고 의무

※ 출처 : 신수용, AI for Healthcare (Facts & Limitations) & Privacy Protection for Healthcare, 발표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5.9.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실 경우 한국데이터진흥원의 이슈리포트임을 명시해 주십시오.
- 자료의 내용은 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한국데이터진흥원 정책기획실 임태훈
02-3708-5364, taehoon@kdata.or.kr